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검 토 보 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19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입법필요성	4
2. 법률안의 구성체계	9
3. 목적(안 제1조)	11
4. 설립(안 제2조)	12
5. 기능(안 제3조)	16
6. 임원 및 이사회(안 제6조, 안 제7조)	19
7. 기타(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22
8. 부칙(안 제1조 및 안 제2조)	27
※ 참고	29
【참고 1】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29
【참고 2】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비교	30
【참고 3】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	31
【참고 4】 김문수 의원안과 김대식 의원안 비교	3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8.
3. 회부연월일 : 2024. 10.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대와 같은 법률로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고등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임.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해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나, 원격대

학은 입법불비상태로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로 운영해 오며 따라 법규적, 행·재정적, 정책적 차별사항이 지속됨으로써 선도적 디지털기반으로 운영해오던 원격대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온·오프라인 대학의 특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발전을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과 K-원격대학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국원격대학 교육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나.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학생 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원격대학의 교육과정·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며, 협회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협회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회나 한국사이버대학교육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입법필요성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²⁾에 근거하여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³⁾에 근거하여 전문대학의 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음.

이에 비해 원격대학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근거 법률 제정 없이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설립(2004년도 설립등기)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1)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3)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 대학의 종류에 따른 협의체의 설립 현황과 근거 >

대학의 종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학교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근거 법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없음 (민법상 사단법인)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정안은 원격대학 협의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원격고등교육의 혁신과 우리나라 온라인교육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4)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하며,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5)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1조⁶⁾ 등의 규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포함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원격대학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1개교⁷⁾, 사이버대학 20개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0조제2항⁹⁾의 취지와 대학·전문대학과 구분되는 원격대학의 특수성 그리고 대학과 전문대학의 협의회는 각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984.4.10.)」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1995.12.29.)」에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1.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받으면 제3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7) 원격대학에 해당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현재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회원대학이 아니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회원대학에 속해 있음.

8) 【참고 1】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9)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근거를 두고 설립·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격대학 협의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차별화된 원격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교육콘텐츠의 공동 사용, 사이버 도서관의 공동 운영 등 원격대학 제도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원격대학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¹⁰⁾이 발의되어 논의되다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제정안과 같은 취지의 법안이 앞서 발의¹¹⁾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109호, 2020. 11. 9.

11)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109호, 2024. 8. 13.

참고 4. 김문수 의원안과 김대식 의원안 비교

<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간 차이점 >

구분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설립목적	▷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 (「고등교육법」 제28조)	▷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 (「고등교육법」 제47조)	▷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고등교육법」 제52조)
수업방식	▷ 출석수업 위주 (일부 원격수업 가능)	▷ 출석수업 위주 (일부 원격수업 가능)	▷ 원격수업 위주 (일부 출석수업 가능)
대학입학 전형 기본사항 공표시기	▷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함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	▷ 좌동	▷ 학교협의체(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10월초 공표(법적근거 없으나, 통일된 ‘원격대학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이 필요하다는 원격대학의 의견에 따라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정하여 각 대학에 시달)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함

자료: 교육부

2. 법률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의 제명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으로 총 19개 조의 본칙과 2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 조문 체계 >

제1조 목적	제10조 교직원의 파견근무
제2조 설립	제11조 자료제공
제3조 기능	제12조 회계연도
제4조 정관	제13조 사업계획서 등
제5조 총회	제14조 결산보고
제6조 임원	제15조 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제7조 이사회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8조 사무총장	제1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경비보조 등	제18조 민법의 준용
	제19조 과태료

제정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대교협법”이라 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전문대교협법”이라 함)과 법률의 기본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나,

안 제3조(기능), 안 제6조(임원) 등 일부 조항에서 차이가 있고, 두 법과 달리 제정안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관련 조항이 없음.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조문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제5조(총회)	제5조(총회)	제5조(총회)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제8조(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제9조(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제9조(경비보조 등)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제11조(자료제공)	제12조(자료 제공)	제12조(자료 제공)
제12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제14조(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결산보고)
제15조(결정사항의 준수 의무)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 의무)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 의무)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7조(업무위탁)	제17조(업무위탁)
	제18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제20조(「민법」의 준용)
제19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이하에서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및 제정안의 목적을 살펴보면, 각 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회원 학교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협의회의 목적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u>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u> 를 설립·육성하여 <u>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u> 을 높이고 <u>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u>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u>한국대학교육협의회</u> 를 설립·육성하여 <u>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u> 을 높이고 <u>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u>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u>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u> 를 설립·육성하여 <u>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u> 을 높이고 <u>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u> 목적으로 한다.

4. 설립(안 제2조)

안 제2조는 원격대학의 장은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립하고,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직으로 회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설립) >

제2조(설립) ① 원격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동 조항 또한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협의회 설립의 근거, 협의회는 법인격 및 당연직 회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협의회 회원 관련 규정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비교
제2조(설립) ① <u>원격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u>	제2조(설립) ① <u>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u>	제2조(설립) ① <u>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u>	유사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비교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동일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유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을 말하는데,

사이버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¹²⁾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이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참고 2】).

제정안은 본칙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12)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시설의 장을 회원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회원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고등교육법」 제10조¹³⁾에 따라 원격대학 협의체는 원격대학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회원 범위에 「고등교육법」 상의 원격대학¹⁴⁾의 장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을 포함하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을 협의회 회원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사이버대학보다 먼저 설립·운영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대부분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되다가 전환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¹⁵⁾,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제2항¹⁶⁾에 따라 원격대학의 명

13)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칭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점, 현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회의 회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제정안 제2조제3항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같이 원격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장을 당연히 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교협, 전문대교협과 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개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5)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종류에 포함(2007.10.17. 개정)되기 전까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음.

16)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1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원격**", "**사이버**" 또는 "**가상**" 등 원격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기능(안 제3조)

안 제3조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원격대학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3조(기능) >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원격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국민의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7.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8.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원격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원격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교협법 및 전문대교협법의 기능에 비해,

제정안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안 제3조제1항)은 국민의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제6호),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제7호),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제8호)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강의·수강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원격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보이며,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둔다는 「고등교육법」 제10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는 제정안 동조제2항이 ‘원격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은 각각 ‘대학교육’과 ‘전문대학교육’으로 자문 및 건의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3조(기능) ② 협의회는 <u>원격교육</u>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② 협의회는 <u>원격대학교육</u>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협의회의 기능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제3조(기능)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원격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국민의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7.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8.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원격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보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② 협의회는 원격교육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6. 임원 및 이사회(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6조는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보궐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7조는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임원), 안 제7조(이사회) >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와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와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안 제6조제1항은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제3항은 대교협법과 전문 대교협법과 달리 임원의 연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의회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 비해 총 회원 수가 적고, 총 회원 수 대비 임원 비율(7명, 31.8%)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임원의 연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7조는 대교협법 및 전문대교협법과 동일하게 이사회를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이사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 감사 2인은 심의·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각 협의회별 임원 및 규정 비교 >

분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제정안)
회장	1명	1명	1명
부회장	3명	10명 이내	1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25명 이상 30명 이하	3명
감사	2명	2명	2명
총 임원 수 (임원비율)	16명 이상 26명 이하 (8~13%)	29명 이상 43명 이하 (21.6%~32.1%)	7명 (31.8%)
총 회원 수	200명	134명	22명
임원임기	2년	2년	2년
연임규정	없음	없음	있음

< 임원 및 이사회 규정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좌 동) ⑤ (좌 동)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좌 동) ③ (좌 동)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제7조(이사회)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7. 기타(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

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회 조직 구성 및 운영, 역할, 회계 및 행정상 의무, 업무의 위탁,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동 조항들은 대부분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의 체계와 문구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대교협법 및 전문대교협법과 달리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에 관련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대교협, 전문대교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제정에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가 대교협법 및 전문대교협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교육부 수정의견 >

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비 고
제9조(경비보조 등) ③ 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 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 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 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u>삭제</u>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지원은 개별법에 근 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 시 지원이 가능하므 로 <u>제정에 실익이 없음</u> -대교협법은 동 조항을 규 정하고 있으나, <u>전문대교 협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 음</u> ※ <u>기획재정부도 같은 의견임</u>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 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교직원의 파견을 <u>원격대 학에</u>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 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교직원의 파견을 <u>교육기 관에</u> 요청할 수 있다.	-대교협법과 전문대교협법 과 동일하게 수정함.

< 기타 규정 비교 >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사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 없음)	제8조(사무총장)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좌 동)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사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	제8조(사무총장) ① (좌 동)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사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좌 동)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파견을 <u>원격대학에</u>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u>교육기관에</u>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u>교육기관에</u>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자료 제공) (좌 동)	제12조(자료 제공) (좌 동)
제12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회계연도) (좌 동)	제13조(회계연도) (좌 동)
제13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좌 동)	제14조(사업계획서 등) (좌 동)
제14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	제15조(결산보고) (좌 동)	제15조(결산보고) (좌 동)

제정안	대교협법	전문대교협법
작성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원격대학의</u>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u>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u>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u>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u>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좌 동)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대학의</u>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좌 동)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u>한국대학교육협의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좌 동)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u>한국대학교육협의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좌 동)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좌 동)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대학의</u>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좌 동)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u>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좌 동)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u>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좌 동)

8. 부칙(안 제1조 및 제2조)

안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국민(원격대학)에게 이익을 주는 내용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제정안이 입법화되었을 때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로 간주하고, 동 협회회의 행위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안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회원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에 다른 협회회의 회원인 원격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보지 않으나, 그 협회회에서 회원 탈퇴 시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으로 본다.

교육부는 안 부칙 제2조제2항이 현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회원이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2개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향후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경과조치를 둔 것에 이의가 없으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된 시설로 문구를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2조(경과조치) ② <u>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본다.</u>	제2조(경과조치) ② <u>이 법 시행일 이전에 「평생교육법」 제33조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의 회원으로 본다.</u>

문 의 처

02)6788-5193

【 참고 1 】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기 준 : '24.4.1)

학위 과정	설치 주체 (학교법인)	대학명	개 교 (최초개교)	2024학년 입학정원	'2417준 편제정원	'2417준 재학생수	소재지	동법인학교
학사 과정	건양학원	건양사이버대	'12	1,068	3,336	2,999	대전	건양대
	경희학원	경희사이버대	'09('01)	3,000	9,200	7,460	서울	경희대
	고려 중앙학원	고려사이버대	'09('01)	2,449	7,378	7,343	서울	고려대
	광동학원	국제사이버대	'09('03)	900	2,900	2,639	수원	군장대
	한문화학원	글로벌사이버대	'10	1,100	3,626	2,489	천안	국제뇌교육 대학원대학교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	'09('02)	1,500	3,800	3,364	경산	대구대
	서울문화 예술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10('02)	990	3,630	2,419	서울	-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	'09('02)	1,000	2,800	2,163	부산	동서대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09('04)	1,750	4,790	4,602	서울	한국외대
	서울디지털 대학교	서울디지털대	'10('01)	3,000	9,750	6,848	서울	-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	'09('01)	3,270	10,660	10,083	서울	신일중·고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	'09('01)	2,180	6,890	6,126	서울	세종대
	송실사이버 대학교	송실사이버대	'09('01)	1,650	4,900	4,551	서울	-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	'09('02)	1,500	4,685	4,196	익산	원광대
	열린학원	한국열린사이버대	'11('01)	1,000	3,000	2,812	서울	-
	한양학원	한양사이버대	'09('02)	3,440	10,680	10,883	서울	한양대
	화신학원	화신사이버대	'09	568	1,566	1,436	부산	부산경상대
	태재학원	태재대학교	'23	100	400	22	서울	-
전문 학사 과정	영진교육재단	영진사이버대	'10('02)	1,300	2,600	2,315	대구	영진전문대
	이후학원	한국복지사이버대	'11	1,000	2,000	1,904	경산	-
사이버대학(20교)				32,765	98,591	86,654		
학사 과정	경북학원	영남사이버대	2001	600	1,585	940	경산	영남외대
전문 학사	한민족학원	세계사이버대	2001	1,300	2,600	1,788	경기 광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2교)				1,900	4,185	2,728		
계				34,665	102,776	89,382		

- ※ 영남사이버대 : 2003년 세민디지털대에서 영남사이버대로 교명변경 및 학제 전환(2년제 → 4년제)
-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 2008년 한성디지털대에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로 교명 변경
- ※ 화신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09. 3월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에서 화신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 고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0. 2.26. 한국디지털대에서 고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 국제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1. 9. 1 국제디지털대에서 국제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 송실사이버대 : 2009년 개교이후 2012. 6. 5 한국사이버대에서 송실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 한국열린사이버대 : 2011년 개교이후 2016. 6. 30 열린사이버대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로 교명 변경
- ※ 영진사이버대 : 2010년 개교이후 2017. 3. 1 영진사이버대학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교명 변경

【 참고 2 】 사이버대학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비교

구 분		사이버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 근거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전면 적용)	○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대학원 설치		○ 설치 가능(기준 충족, 평가)	○ 설치 불가
입학정원 외 별도정원 (정원외 학생)		○ 방송대에 준하여 다양화 - 산업체 및 군위탁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 특수교육대상자 제한없이 모집가능 - 학사편입학(입학정원의 20%)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 산업체 및 군위탁 (입학정원의 일정비율) - 특수교육대상자 제한없이 모집가능
산학협력단 설치, 학교기업		○ 설치, 운영 가능	○ 설치 불가
평가 및 재정지원 등 차이점		○ 평가 실시, 행·재정지원 다양화 ○ 법인임원 취임승인·취소 가능 (모든 학교법인)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률 적용	○ 평가 실시, 행·재정지원 약함 ○ 법인 이사장 취임 취소권 없음 (재단법인만 해당)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비정규직보호 관련법률 적용제외
설립의 주체		○ 학교법인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전환 필요	○ 지방자치단체 ○ 학교법인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기준 심사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51조)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준용
설치 기준	교사 (校舍)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990제곱미터(입학정원 1,000명 미만), 1,000명 증가시 475제곱미터씩 증가	○ 660제곱미터 이상
	교원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학과 또는 전공별로 최소 1인 이상, 학생 200명당 1인 이상 확보	○ 학과 또는 전공별로 최소 1인 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하되, 최소 35억원 이상 ※ 전환인가 원격대학은 전환 후 3년 이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해야 함	○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확보 ○ 총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같음
재무·회계 운영		○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 포괄적 재무·회계 관리, 감독 가능 - 강화된 제재수단 확보	○ 평생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 제한된 재무·회계 관리, 감독 (재산보호, 예·결산 보고 등) - 제재수단 미약
학생 학습권보호 장치		○ 사립학교법(전면 적용) - 납부금 및 예금채권 압류금지	○ 평생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 준용) - 납부금 및 예금채권 압류금지

【 참고 3 】 사이버대학 운영 현황(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 포함)

※ 2009년부터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으로 개교 · 운영

학년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사이버대학)														
총 학교수	9	15	16	17	17	17	17	17	18	19	20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입학정원 총계	6,220	16,700	20,600	22,600	23,550	23,550	21,060	25,680	27,960	29,400	30,735	32,76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410	33,945	33,945	33,909	34,215
신입생 등록자수 (등록률)	5,235 (84.2%)	9,920 (59.4%)	10,987 (53.3%)	10,459 (46.3%)	14,620 (62.1%)	18,138 (77.4%)	17,370 (82.5%)	21,001 (81.8%)	22,814 (81.6%)	23,979 (81.5%)	25,750 (82.7%)	24,767 (75.6%)	25,331 (75.6%)	24,804 (74.2%)	25,327 (75.6%)	26,256 (78.6%)	24,719 (74.0%)	25,188 (75.4%)	25,285 (75.7%)	25,577 (75.3%)	26,479 (80.9%)	26,249 (83.3%)	27,366 (80.0%)
학생현황 (‘24.4.1.기준)	<학부> ○ 입학정원 : 34,665명 ○ 재학생수(정원외 포함) : 89,382명(131,674명) ○ 졸업생수(‘22학년도) : 35,742명 <특수대학원, ‘23.9.기준> ※ 9개 대학 17개 특수대학원(석사과정) ○ 입학정원 : 1,054명 ○ 재학생수 : 2,655명 ○ 졸업생수(‘22학년도) : 760명 (연령별) ‘23학년도 입학 기준 : 25세 이상 신입생 수 비율 80.1%, (직업별) ‘23학년도 입학 기준 : 신입생 중 직장인 비율 71.2%																						

【 참고 4 】 김문수 의원안과 김대식 의원안 비교

김문수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원격대학교육 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u>고등교육법</u>」 제2조제5호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및 「<u>평생교육법</u>」 제33조제3항에 따라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u>고등교육법</u>」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원격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u>원격대학 교직원의 연수</u>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원격대학교육 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력을 통하여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u>원격대학의 장</u>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u>협의회가 설립되면</u> 원격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원격교육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원격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원격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u>국민의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 교육에 관한 연구개발</u>

김문수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7.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7. 원격대학의 특성화 및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8.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8. 첨단(신기술)분야 전문교육 및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원격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10. 그 밖에 원격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u>원격대학교육의</u>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u>원격교육의</u>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1. 목적
2. 명칭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그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둔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

김문수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소속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김문수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파견을 원격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파견을 원격대학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연도)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김문수 의원안	김대식 의원안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